##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<br>번호        | 9-386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| : 2024. 2.<br>: 안 산 시 |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_               | · · ·<br>산적인 농업시       | 생산기반시설 목적<br>'한(띄어쓰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| ,         |       | ,                     | 위하 |
| ○ <b>중</b> 복    | 생 관련법령이                | 에 적합하게 조문<br>제3호부터 제5호 <i>끼</i><br>조) 삭제      |           | 조 ~ 안 | 제2조)                  |    |
| □ 신·<br>□ 관계    | 법령발췌서                  | 【붙임 1】<br>기표: 【붙임 2<br>기: 【붙임 3】<br>기: 해당사항 없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br>□ 예산<br>※ : | <b>수반사항</b><br>비용추계서 1 | : 【 <b>붙임 4</b> 】<br>미첨부 사유서 첨 <sup>3</sup>   | . –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_ (일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)<br>23.12.28. ~ 20<br>견 3건, 반영 3건            | 24.1.17.( | 20일간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○ 입법예고 의견서【붙임 5】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
○ 방침결정문 : [붙임 7]

#### [붙임 1]

#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 중 "한하여"를 "한정하여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- 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제4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・과 |                | 농업정책과      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이     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 | 농업정책과장<br>김 행 런    |  |
| 안     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| 농업기반시설팀장<br>김 화 궁  |  |
| 자      | 담 당 자<br>성명·전화 | 최 자 영<br>(행정 2316) |  |

### [붙임 2]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       | 제1조(목적)           |
| 정비법」제23조 및 <u>같은 법 시</u> | <u>같</u> 은 법 시행   |
| 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| <u>령 제32조에 따라</u> |
|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산       | 제2조(적용범위)         |
|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목적외 사용에 <u>한하여</u> 적용한다. | <u>한정하여</u>       |
| 제3조(경비징수 범위) 농업생산기       | 제3조(경비징수 범위)      |
| 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<u>각호</u> 와  | <u>각 호</u>        |
| 같다. 다만, 경쟁입찰로 사용자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금액으로 할 수 있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1.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         | 1.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 |
| 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:          | 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 |
|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        | <u>는 경우</u>       |
| 당하는 금액. 다만, 신ㆍ재생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에너지 설비의 설치 · 운영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- 2.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·포획·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: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- 3.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 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 를 사용하는 경우: 그 토지의 공시지가(공시지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\_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감 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 으로 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 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 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 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 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 지가를 말한다)의 100분의 5

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 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

<삭 제>

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에 이상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「국유제산법」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가. 용수로・배수로, 농로 등을 통행로・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

나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

4.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: 사용
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
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
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
지・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
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
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
금액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합의에 의한 금액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이 외의 사항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을 준용한다.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